

보도자료



| | | | |
|------|---|------|---|
| 보도일시 | 2010. 8. 31.(화) 배포시 | | |
| 배포일시 | 2010. 8. 31.(화) 14:00 | 담당부서 |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조달청 구매총괄과 |
| 담당과장 | 재정부 박성동 (2150-5210) 조달청 이상윤 (042-481-7139) | 담당자 | 재정부 권오영 사무관(2150-5221) 조달청 김영민 사무관(042-481-7232) |

제목: 조달물품 구매 적격(계약이행능력)심사 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 우대

-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정부구매력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,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
 - 「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」 및 「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」을 개정하여 9.1일부터 시행
- '10.4.14일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시행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*, 녹색사업 인증*, 녹색전문기업 확인*기업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(1.5점)을 부여하고,
 -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대해 가점(1.5점) 부여
 -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한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에 대하여도 가점(1.5점) 부여함으로써

- **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한편,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**

| 구분 | 인증(확인) 대상 | 인증(확인) 기준 |
|------------|---|---|
| 녹색기술 인증 |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,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규격 제시 | 기술성, 시장성, 녹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 |
| 녹색사업 인증 | 녹색산업설비·기반시설의 설치·공사, 녹색기술·산업의 응용·보급·확산 등 녹색 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| 사업의 경제성은 금융권에서 별도 심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, 사업의 녹색성 위주로 평가하고 인증 |
| 녹색전문 기업 확인 |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% 이상인 기업 | |

- 특히, 정부 구매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인 “신규채용 우수기업”에 대하여 **배점 및 평가방법을 기업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**
 - **배점기준을 종전 최대 2점에서 3점으로 신인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상향 조정**하고
 - 고용인원과 고용율을 동시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했던 평가기준을 **기업규모별 고용율 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단일화** 하는 등
 - 이를 통해 **신규채용 우수기업이 미채용 기업보다 가격투찰범위가 최대 1.5%까지 확대되어 낙찰자선정시 우선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함

□ 또한,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함

-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**상생협력우수기업***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(0.5점)을 부여하는 한편,
-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 공익추구, 수익 또는 이윤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하는 **사회적기업***에 대하여 가점(1.0점)을 부여하고
- 가족친화적인 사회·직장환경에 관련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**가족친화인증기업***에 대하여도 가점(최대 1.0점)을 부여

- **상생협력우수기업** :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,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, 인력, 자금, 구매,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는 등 지식경제부 장관에 의해 선정된 기업(표창성격으로 유효기간은 없으며, '07년 9개사, '08년 8개사, '09년 13개사)
- **사회적기업** :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(인증취소 시까지 유효/289개사)
- **가족친화인증기업** : 가족친화적인 사회·직장환경 등에 관련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(3년간 유효하며,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/34개사)

□ 그 밖에 실효성 부족 및 해석상의 논란이 되어 왔던 신인도 항목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함

- CE 및 UL인증을 폐지하는 한편, KS 및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 규격에 대한 해석기준을 명확화

- 아울러, 국민의 4대 기본 의무인 납세와 관련하여 **성실 납세자에 대한 가점을 폐지하는 등 가점항목을 정비함**
- **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번 「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」 등 개정을 통해**
 - **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,**
 - **기업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R&D투자, 일자리 창출,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정부시책을 선도·지원하기로 함**

<붙임>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주요 개정 사항

기획재정부 대변인

<붙임>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(가점 항목)

| 개정 이유 | 현 행 | | 개 정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(신인도)평가요소 | 가점 | (신인도)평가요소 | 가점 |
| 「저탄소 녹색성장」 견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우수재 활용(GR)인증 환경표지인증 | 1.5점 | (왼쪽과 같음) | 1.5점 |
| | (신 설)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녹색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1등급제품 | 1.5점 |
| 일자리 창출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채용 우수기업 (최대 2점) | 1.0~ 2.0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채용 우수기업 (최대 3점) | 1.0~ 3.0점 |
|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유인 | (신 설)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가족친환인증기업 (등급에 따라 최대 1점) | 0.5점 1.0점 0.25~ 1.0점 |
| 가점 폐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CE인증, UL인증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모범납세자 표창자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자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 업체 | 1.0점 1.0점 0.2점 0.2점 0.2점 | (폐 지) | |